

2013년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 실시 공고

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0항, 시행규칙 제106조,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-54호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수준향상을 위한 「201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」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평가대상기관 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
(개별기관별 별도 통보)

2. 평가자 : 안전보건공단 직원 2인 및 외부전문가 1인으로 평가반 구성

3. 평가대상업무 : 평가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업무(2011.6.10~2013.6.9)

※ 2년 미만의 기관인 경우에는 특검기관 지정일 이후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평가

4. 평가방법 : 기관별 방문평가

5. 평가표 : 붙임 참조

6. 평가일정

-평가실시 : 2013. 6월 ~ 9월중 1~2일

※ 기관평가 방문일은 평가반별로 해당 기관과 유선 협의 후 확정하며, 안전보건공단 직원 및 외부전문가가 평가일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음

-평가결과(절대점수) 통보 : 2013. 10월중

-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: 2013. 10월~ 11월초

※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 실시

-최종 평가결과 공표 : 2013. 12월중

7.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관평가 담당자(032-5100-722, 725)에게 문의

2013년 5월 10일

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